

# 위탁출판제도 개선 관련 특정감사 결과

## I. 특정감사 배경

- 새정부 출범계기 자체 공직기강 점검시(3.18~29) 위탁출판제도는  
①기존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②부적절한 예산집행 및 예산낭비  
③인세를 현물로 받아 국고손실 초래 등 문제점이 있어 ‘불합리한 관행’  
개선의 차원에서 특정감사 실시

## II. 감사 개요

- 감사기간 : 예비감사('13.5.7~ 5.9), 본 감사(5.13~5.16)
- 감사반 : 감사담당관실 ○○○ 서기관 외 1명
- 감사방법 : 실지감사
- 중점 감사내용
  - 박물관의 위탁출판 현황 파악 및 관행적인 불합리성 검토
  - 위탁출판 계약 체결의 적법성 검토(업체 선정, 체결 절차, 구입금액 등)
  - 인세의 현물납부 등 예산낭비와 도록 재고관리 등 문제점 분석

## III. 특정감사 결과

### 1. 위탁출판 현황

- 최근 5년간 164건 2,671백만원 집행
  - 중앙박물관(88건 1,466백만원), 11개 지방박물관(76건 1,205백만원)
  - 지난 5년간 전체 출판물 224건의 72%가 위탁 출판
- 위탁출판 수행업체 : 중앙박물관의 위탁출판은 3개 출판사가 59% 차지
  - 지난 5년간 총 출판건수 164건중 161건 서울업체(98%)
  - 지역 업체는 ‘기획/편집’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참여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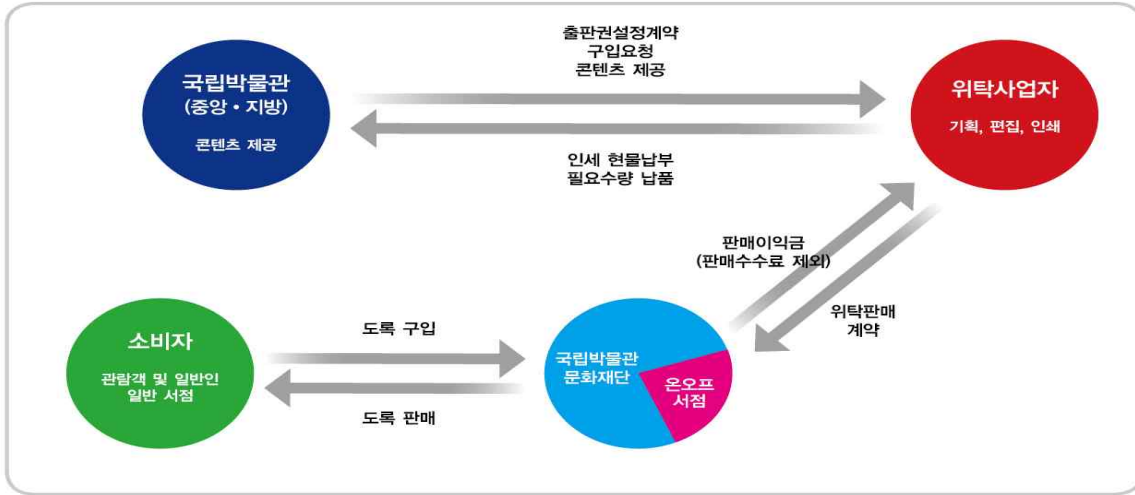
- 위탁출판물 판매가격은 출판사 요청금액이 그대로 반영
  - 박물관에서 매년 534백만원 구입, 위탁출판사 제작비용 보전
  - 지난 5년간 사업부서에서 출판사 요청 판매가격을 조정 없이 승인
- 사업부서에서 행정 편의적인 수단(수의계약 등)으로 이용
  - 위탁출판 목적과는 다르게 위탁출판사 노력 소홀로 일반판매 저조
  - 인세는 현물로 수령 무계획적으로 과도 배포관리(5년간 547백만원)

## 2. 특정감사 결과

문제점	감사 결과
위탁사업자 공모 및 선정 기준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계약법에 따라 ‘나라장터’를 이용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여 박물관 출입업체에 특혜시비</li> <li>○ 기존 거래업체에 유리하도록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서 중소기업체의 진입장벽(5년간 지방업체 3건 뿐)</li> </ul>
위탁출판 계약체결 및 구입의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부서에서 출판권설정계약을 통해 특정출판사에게 특혜성 수의계약 충족요건 부여(5년간 총 164건)</li> <li>○ 계약담당부서 검토 없이 사업부서가 승인한 판매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출판물을 구입하여 업체 발간경비 보전</li> </ul>
인세 현물납부 및 현물 활용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내부 규정으로 인세를 현물로 대납케 하여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무계획적으로 도록 배포(5년간 547백만원)</li> </ul>
도록 등의 배포 및 재고관리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가의 도록을 내부직원·대학교수·유관단체 등에게 무분별하게 배포선 확대(평균 689곳에 876권 배포)</li> <li>○ 과도한 재고 수량 유지 및 재고가 있음에도 추가 구입 등 체계적 재고관리 미흡(재고량 100권 이상 출판건 48건)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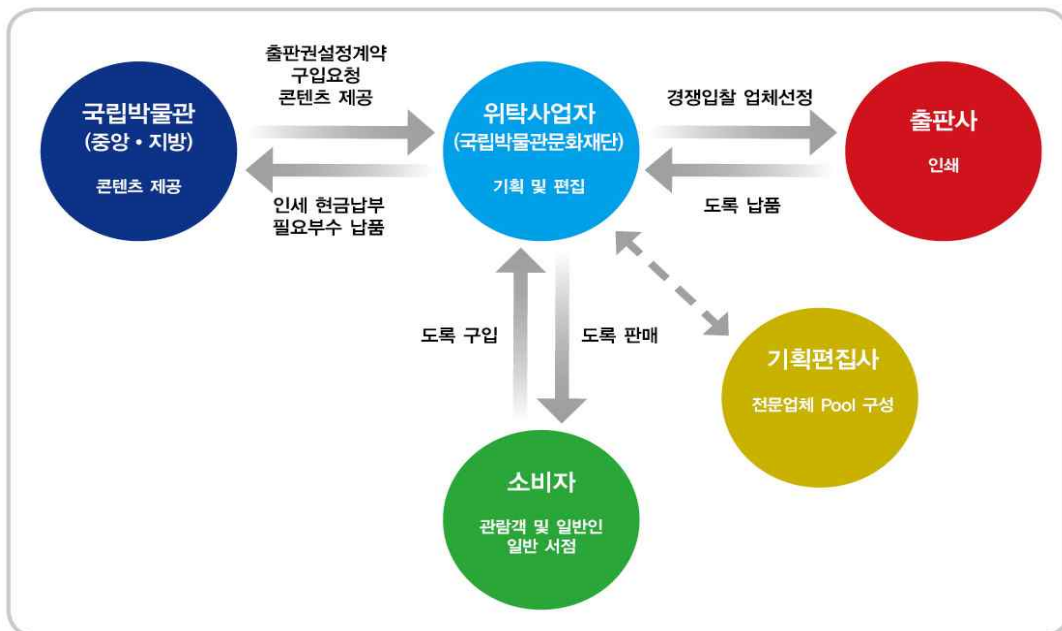
## IV.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

### 가 현행 위탁출판



⇒ 박물관(사업부서)에서 ①공모와 제안서 평가 후 위탁업자 선정 ②출판권 설정계약체결 ③도록 판매가격 승인 ④인세 현물 수령 및 과도한 재고관리 등의 회계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업체와의 특혜시비 및 유착의혹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, 또한 학예사들의 전시·연구활동 전념에 장애 요인

### 나 개선방안



- 국립중앙박물관(지방포함)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3조의 규정1)에 의거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여 도록 발간
  - 박물관은 ▲콘텐츠 제공(규격서 포함) ▲위탁출판권 설정계약 체결 ▲배포계획에 따라 필요부수 산정 및 구입, 배포·관리 ▲인세는 현금으로 국고세입 처리(현행 5-7%에서 7-10%로 상향 조정)
  - 국립박물관문화재단(위탁사업자)은 ▲기획·편집과 인쇄업체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경쟁입찰(필요시 전문업체 풀 구성 운영) ▲박물관에 필요부수 판매 및 인세 현금으로 세입조치 ▲관람객·일반인을 위해 매장 및 일반서점 도록판매 ▲전시·판매 홍보를 위해 언론매체 등 적극 활용

⇒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서 사업부서와 ①기획·편집 및 인쇄업체의 사전 접촉을 차단하여 특혜시비와 유착 우려가 없고 ②학예사가 본연의 업무인 전시·연구활동을 전념할 수 있고 ③기획·편집과 인쇄 업체의 분리 발주를 통해 지역업체 및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는 물론 경제민주화에 기여 ④인세율 상향 조정 및 인세의 현금 납입으로 국세 증대 효과도 상당히 크게 나타남

## 다 기대효과

- 국고 세입증대 효과(매년 109백만원 예상)
- 배포선 조정으로 예산절감(매년 100백만원 예상)
- 지방박물관 도록은 지역 인쇄업체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- 진입장벽 완화(기획·편집과 인쇄 구분 발주)로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기여
- 박물관 학예사의 행정업무 축소로 효과적인 전시·연구활동 가능
-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수익성 확보로 지방박물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

⇒ 201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시(5.16) 대통령께서 돈 나올 곳은 한정돼 있는 만큼 재정 씹씹이를 최대한 아껴야 하고 각 부처의 '자기희생'이 필요함을 강조하신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선제적인 개선방안으로 판단됨

1)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3조(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) ① 정부는 문화유산의 보존·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을 설립한다.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5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## V. 조치계획

- 국립중앙박물관에 특정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규정 개정 및 제도 보완 요구

### 가. 박물관(지방포함) : 관련규정 개정 및 도록 배포선 정비와 재고관리 체계 마련

- 국립박물관 문화상품규정 개정
  - 인세는 현금으로 세입조치하고 인세 비율 합리적 상향 조정
  - 지방 박물관이 출판하는 도록 등에 대하여 가능한 한 지역에서 인쇄
  -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수익 일부를 지방박물관 편의시설 투자 근거 마련
- 위탁출판권 설정 표준계약서 및 합리적인 재고관리 체계마련 등

### 나.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: 박물관 위탁출판을 수행토록 관련규정 개정

- 출판사업과 박물관·미술관(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)의 위탁사업을 주요사업으로 반영하는 정관 변경
- 위탁출판 사업수행을 위한 직제 등 관련규정 개정 검토